

## 광명시 민원창구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정	1994.	9. 22	예규 제 3호
전문개정	1996.	8. 29	예규 제30호
개정	1998.	12. 9	예규 제41호
	2004.	9. 24	예규 제57호(법령질의응답및관리지침)
	2007.	10. 25	예규 제65호
	2008.	6. 16	예규 제67호(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지침)
일부개정	2013.	5. 22	예규 제82호
일부개정	2016.	9. 26	예규 제90호(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성회통 예방 지침 등 일부개정지침)
전부개정	2020.	5. 1	예규 제9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를 일원화함으로써 대민행정 수행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 민원창구 공무원이란 별도로 설치된 민원실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민원실(상설포함) 근무자 중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2.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으로서 상시 근무자
3. 민원관계 서류(인·허가, 면허·등록 등) 등을 접수 및 처리하는 공무원

제3조(민원창구 공무원 지정) 민원창구 공무원의 지정 범위는 별표와 같이한다.

제4조(수당지급) 이 지침에서 정한 민원창구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별표9의 민원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2020. 5. 1 예규 제99호 전부개정>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민원창구 공무원의 지정 범위(제3조 관련)

부 서 명	지정 범위	비고
민원여권과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세정과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세원관리과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토지정보과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위생과	종합민원실 근무자 중 민원관계 서류 등을 전담하여 직접 처리하고 있는 공무원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보건소	민원창구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동 행정복지센터	가족관계등록, 주민등록, 제증명 담당자	